

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년 5월 18일 조례 제1147호
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2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. <개정 2013. 10. 18>

제3조(공개방법)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월 집행실적을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 <개정 2013. 10. 18>

제4조(공개내용)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(건별구분)·집행목적·집행대상자·집행유형·집행금액을 공개 한다.

제5조(공개범위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다음 각호의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동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한다.

1. 지출결의서
2. 견적서, 영수증,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

제6조(집행기준)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」 [별표]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중 “시장, 부시장, 국장, 5급이상 기관의 업무추진비”의 공

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

표부서란 “해당 실·과·소·동”을 “회계과”로, 공표주기란 “연1회”를 “월1회”로 하고 공표시기란 “익년 3월 이내”를 “익월”로 한다.

부칙 <2013. 10. 18 조례 제132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